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산업기술의 범위에서 ‘전력기술’을 삭제하고, ‘해양수산신기술’을 추가함(안 제2조제1호)
-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·변경·해제, 기술의 판정, 수출 및 해외인수·합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제6항 신설).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의2 신설).
-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·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(안 제9조의3 신설).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에 대하여 수출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제11항 신설).
- 해외인수·합병 승인 심사시 ‘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’과 함께

‘국민경제적 파급효과’도 검토하도록 함(안 제11조의2제4항).

-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-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외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확대함(안 제14조)
-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의2제2항).
-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,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(안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).

II. 검토 의견

1. 해외인수·합병 승인 심사기준으로서의 ‘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’의 적절성

- 개정안 제11조의2제4항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해외 인수·합병, 합작 투자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승인 심사기준에 국가안보 외에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개정안은 대상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나, 유사 입법례¹⁾에서는 수출에 대한 심사기준과는 달리 해외인수·합병 등의 경우에는 국가·경제 안보를 심사기준으로 규정하여 이를 구별하고 있고, 승인 심사에 포괄적인 기준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경우 외국인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.

다만,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, 하위법령 정비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 등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²⁾.

1)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제12조(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)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전략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·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(이하 “산업기술보호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.

제13조(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·합병 등)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·합병등이 국가·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2) 2024. 11. 28.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시회의록

2. 그 밖의 사항

- 그 밖의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동 찬)